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설치 등〉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1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신설 (안 제18조의2 신설)	2
2. 경제안보기술 등의 유출 금지 규정 신설 (안 제46조의2 신설)	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 24.

다. 회 부 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신설 (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u>경제안보관리협의회(제18조의2)</u> - 소속 : 국무총리 소속 - 심의사항 : 경제안보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경제안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구성 및 운영 등: 대통령령 위임

개정안은 경제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은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신설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경제안보관리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를 증진시키고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위원회의 중복 설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¹⁾ 경제안보관리협의회는 「공급망안정화법」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정부위원 19인과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음.²⁾

그리고 주요 심의 내용에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³⁾ 따라서, 필요한 경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동 위원회는 분기별 1회(연간 4회) 원칙으로 개최되며, 위기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됨. 또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비축 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운영됨

3) 「공급망안정화법」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협의·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공급망안정화와 관련하여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 보다 용이한 점이 있으나,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

-
5.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정보원장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부총리 주재 ‘공급망안정화위원회’와 제1·2차관 주재 3개 전문위원회와 기능·역할이 유사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에도 관계부처 및 민간(학계·대한상의·수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정보 공유를 하는 중이라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8조의2(경제안보관리협의회) ① 경제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경제안보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2. 경제안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제안보기술 등의 유출 금지 규정 신설(안 제4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경제안보기술 등의 유출 금지(제46조의2)</u> - <u>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를 국외 경쟁사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u>

개정안은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를 국외 경쟁사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근 주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기술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안보에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산업기술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9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하였고,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⁶⁾은 최근 5년 간 33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음. 업종별로는 반도체(39.5%), 디스플레이(16.6%), 전기전자(9%), 자동차(9%), 기계(7%) 순으로, 우리 주력·첨단산업에서 기술유출이 집중되고 있음.⁷⁾

5)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6)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7) 정부,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5~'27)」(2024. 12.)

< 주요기술 유출 현황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최근 5년 합계
산업기술	14	17	22	20	23	96
국가핵심기술	5	9	10	4	5	33

자료: 정부,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5~’27)」(2024. 12.)

이에 개정안은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를 국외 경쟁사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 반도체 등 주요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 리더십을 보호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요기술과 개인정보의 유출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통해 주요 기술의 유출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주요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기술

특성 및 보호 중요성에 따라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⁸⁾로 구분되어 지정되며, 유출 시 처벌이 이루어짐. 특히,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수출·M&A시 심사 제도가 운영되며, 유출시 강화된 처벌이 부과됨.⁹⁾

8) 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임(「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1호)

9)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¹¹⁾

둘째, 개정안은 경제안보기술 등의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인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의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술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기술·개인정보는 각 개별법에서 광범위하게 규정·보호 중이라는 입장임

< 기술 유출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주요 처벌 규정 >

구분	위반 행위	벌칙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개인정보보호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2(경제안보기술 등의 유출 금지) <u>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를 국외 경쟁사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문의처

02)6788-5155